

강풍에 의해 작업 대기 중 날아온 합판에 충격한 사고

(중부본부 2018-21-51-004)

재해개요

○ 2018.4.11(수) 15:15경 ○○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 작업 중 강풍에 의해 잠시 작업 대기 중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위 누수방지용으로 올려놓은 합판이 날아와 재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.

재해상황도



재해발생 원인

○ 제품, 자재, 부재 등 방치 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】

- 제품, 자재,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거나 단단히 결속하는 등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, 컨테이너 위 합판, 큰 돌을 방치하는 등 그러하지 아니함.

○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미실시 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】

- 사고 발생 당시 최대풍속이 20m/s를 초과하는 등 강풍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,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통보를 하지 않고, 근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.

재해예방대책

○ 건설폐기물 등 자재, 부재 등 지정장소 보관 관리

- 근로자가 자주 다니는 통로 또는 대기장소에 자재, 부재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, 사용 또는 방치하여 강풍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할 시 근로자에게 충격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여야 하며, 지정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부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 근로자들에게 날아갈 우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.

○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

-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는 악천후 및 강풍 등 현장상황을 수시 확인 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
- 작업중지 시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대피장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.